

표준번호

KCS-0Z-0203

사업 이사회 운영지침

개정일자(No)

2024.07.15(1)

표준	적용 범위	표준 책임팀 적		적용 일자		검토 주기
관리	공통		재무팀 2024		09.01	1회/년
목적	이 지침은 이사회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	구정함을 목		
업무범위	이사회의 구성과 회의소집 및 결의사항, 의사록 관리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.					
	관리지표		산출기준		주기	비고
성과관리			해당사항 없음			
제·개정	조직변경 및 ESG경영 추가					



표준번호

KCS-0Z-0203

이사회 운영지침

개정일자(No)

2024.07.15(1)

1. 업무 FLOW CHART

INPUT	업무 흐름도	주요업무내용	ОИТРИТ	책임팀	IT Sys. & 관련표준
이사회 안건 발생	부의 안건 발생			<u>관련팀</u>	
	소집결의	- 수시 개최 - 이사회 의장이 소집		재무팅	
	소집통지	- 회일 5일 전 이사 전원통 지 (서면 or 전자문서 or 구두)		재무팅	
	이사회 개최			재무팅	
	원안 심의			재무팅	
	결의 성립	-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		재무팅	
	이사회 종료			재무팅	
이사회 의사 결론	의사록 작성	-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, 출석이사 서명		재무팅	



표준번호

KCS-0Z-0203

이사회 운영지침

개정일자(No)

2024.07.15(1)

2. 용어의 정의

NO	용어	정의
1	이사회	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
2	이사	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지위와 책임을 갖는 사람
3	사내이사	이사회의 구성원 중 회사에 상근하여 경영과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임원
4	사외이사	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임명
5	대표이사	사내이사 중 이사회의 대표로 선임된 이사
6	이사회 의사록	이사회에서 나온 회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

3. 책임과 권한

3.1 대표이사(이사회 의장)

- 1) 회사의 업무를 결정 및 집행하며,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함
- 2)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또는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사항의 업무를 집행
- 3)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, 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함

3.2 사내이사

- 1)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
- 2)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

3.2 사외이사

- 1)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
- 2) 사내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에 대하여 그 적법성 및 타당성을 감시, 감독

3.3 이사회

- 1)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 및 재무,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2)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- 3) ESG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책임을 진다.
- 4)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사항은 대표이사



표준번호

KCS-0Z-0203

이사회 운영지침

개정일자(No)

2024.07.15(1)

에게 위임한다.

3.4 재무팀(이사회 간사)

- 1) 이사회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,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한다.
- 2) 이사회 소집통지, 부의안건 정리 및 배포, 의사록 작성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3.5 HR팀

1)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검토 및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.

3.6 감사팀

1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운영평가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

3.7 이사의 책임

- 1) 이사회 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전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- 2) 이사는 법령과 정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책임을 다한다.

4. 상세 업무 절차

4.1 이사회 구성

- 4.1.1 이사의 선임
 - 1)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 - 2)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3)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 - 4) HR팀에서는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 추천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

4.1.2 이사회 구성

- 1)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2)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1)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2)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두며, 세부지침은 감사위원회 운영지침(KCS-0Z-0204)을 따른다. 4.1.3 이사회 의장
 - 1)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며, 선임된 대표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 의장을 선출한다.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, 이사회의 질서를 유



표준번호

KCS-0Z-0203

이사회 운영지침

개정일자(No)

2024.07.15(1)

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.

2) 이사회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4.2 이사회 소집

- 4.2.1 이사회 소집
 - 1) 이사회 부의안건 발생 시,
 -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 - 2) 이사회 의장이 필요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인 이상의 이사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, 소집한다.

4.2.2 소집 통지

- 1)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5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 이사의 전원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4.2.3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 제안
 - 1) 보고사항이 있거나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부서는 이사회 부의요청서(0Z-0203-01)를 작성하여 간사(재무팀)에게 제출한다. 간사는 이를 검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부의여부를 결정한다.
 - 2) 각 이사가 이사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간사를 통해 이사회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

4.3 이사회 부의사항 및 보고사항

- 4.3.1 이사회 부의사항
 - 1)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- (2)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(3) 정관의 변경
 - (4) 자본의 감소
 - (5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 - (6)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양수
 - (7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기타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 - (8) 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(9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 - (10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


표준번호

KCS-0Z-0203

이사회 운영지침

개정일자(No)

2024.07.15(1)

- (11) 주식배당 결정
- (12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3) 이사의 보수
- (14)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승인 및 주주 총회 보고
- (15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6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- 2) 경영에 관한 사항
 - (1) 이사회 의장 선임 및 해임
 - (2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(3) 공동 및 각자대표의 결정
 - (4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 - (5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(6)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 - (7) 경영진에 관한 규정 개폐
 - (8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
 - (9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3) 재무에 관한 사항
 - (1) 신주의 발행
 - (2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 - (3) 준비금의 자본전입
 - (4)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
 - (5)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 시설투자,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
 - (6)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타법인에 대한 대여(금전 또는 유가증권)
 - (7)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
 - (8) 자기자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대규모 신규차입
 - (9)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타인을 위한 신규 보증 또는 담보 제공
 - (10) 자기주식 취득, 처분 및 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
 - (11) 자기주식 소각
- 4) 이사에 관한 사항
 - (1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 - 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 - (3) 타회사의 임원 겸임
- 5) 기타 부의사항



표준번호

KCS-0Z-0203

이사회 운영지침

개정일자(No)

2024.07.15(1)

- (1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2)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
- (3)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
- (4)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중요 정책의 승인
- (5)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조직구조, 보고체계 및 성과평가 연계방식의 변경
- (6)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
- (7) 기타 법령, 공시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3.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

- 1)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2)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
- 3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
- 4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사항
- 5)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 사항(설계 및 운영 포함)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사항
- 6) 재무보고 및 부정위험과 관련된 제반 위험에 대한 사항
- 7) ESG 경영에 관련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결과와 개선사항.
- 8)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4.4 이사회 심의 의결

- 4.4.1 관계인의 출석
 - 1) 이사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 등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4.4.2 이사회 결의방법

- 1)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2)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
-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3)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4)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이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4.4.3 이사회 의사록



표준번호

KCS-0Z-0203

이사회 운영지침

개정일자(No)

2024.07.15(1)

- 1)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(0Z-0203-02)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2)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3)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4) 회사는 3)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- 5) 이사회 부의 안건, 의사록 등 관련자료는 이사회 간사인 재무 팀에서 관리하며, 본사에 비치한다.

4.4.4 이사회 권한의 위임

1)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4.4.5 긴급사항

- 1)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 회장이 다른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2) 전 항에 의거 긴급 조치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4.5 이사회 내 위원회

- 1)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2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- (1)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- (2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(3)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(4)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3)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4.6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

- 1)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2)1)항의 경우,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5. 법적, 규제적 및 고객 요구사항

NO	요구사항	비고
1	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	



표준번호

KCS-0Z-0203

이사회 운영지침

개정일자(No)

2024.07.15(1)

2	상법	
---	----	--

6. 기록 및 양식

NO	기록 및 양식	양식번호	보존	비고
1	이사회 부의요청서	0Z-0203-01(0)	5 년	
2	이사회 의사록	0Z-0203-02(0)	5 년	

7. 개정이력

ſ	NO	일자	개정내용	
	0	2023.08.01	업무 규정화 및 내부회계통제에 따른 신규 제정	
	1	2024.07.15	조직변경 및 ESG경영 추가	